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상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0.

발 의 자 : 이상희 · 인요한 · 강대식
김재섭 · 박성훈 · 김 건
김성원 · 박수영 · 박성민
구자근 · 정동만 · 박충권
김형동 · 송언석 · 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,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).
- 나.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,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·나목 신설).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본”을 “사본.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가. 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), 시·도당,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(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)이 20만원(후원회를 둔 국회의원, 정당선거사무소, 공직선거의 후보자·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) 이하인 경우

나.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③ (생략)	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39조(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)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<u>사본</u> <단서 신설>	2. ----- ----- ----- <u>사본</u> 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 가. 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), 시·도당, 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 경선후보자들이 선거비용
<신설>	

<u><신 설></u> 3. ~ 7. (생 략) ⑤ · ⑥ (생 략)	<u>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(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)이 20만원(후원회를 둔 국회의원, 정당선거사무소, 공직선거의 후보자 ·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) 이하인 경우</u> <u>나.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